

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8. 27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8. 8. 25
- 다. 상 정 일 자 : '98. 8. 25 (제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내무과장 최 영 옥

나. 제정사유

- 지금까지는 대통령 훈령 28호 '통합방위지침'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나 '97년 6월 1일부터 통합방위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, 통합방위법 제5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, 통합방위 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등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등을 심의 (안 제2조)
-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,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의장의 유고시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(안 제3조)
- 군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됨. (안 제4조)
- 읍면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은 실장과 6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인이상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 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- 동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, 제9조,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제14조에 의하여 군 통합 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,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.
- 단,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동 협의회의 간사직명 (안 제3조 ③항),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 (안 제5조 ①항)의 명칭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것임.

예1) 조례안 제3조 ③항

1. 총무담당간사 : 내무과장 → 총무과장
2. 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재난관리과장 → 폐지됨.
3. 심리전담당간사 : 문화공보실장 → 담당과장 (문화관광과로 개칭)

예2) 조례안 제5조 ①항

- 읍면 통합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·읍면장 → 부·읍면장제 폐지

4. 질의 답변요지

‘생략’

5. 트론요지

‘생략’

6. 심사결과

‘원안가결’

첨 부 :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